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2. 12. 13.>

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전화번호		
	주소		
신청내용	사용측량성과	축척	도엽명
	간행목적		
	간행성과물	명칭	축척
	간행예정일		간행부수
	작업방법		
	축척별 지도활용도엽수		
	복제승인일	년 월 일(승인번호:)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표준작업방법서 1부 2.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	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(하단부 참조)

작성방법 및 수수료

※ 작성방법

1. "간행목적"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2. "작업방법"란에는 작업범위, 색도,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

※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1: 1,000, 1: 1,2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7퍼센트
○ 1: 5,000, 1: 1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8퍼센트
○ 1: 25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9퍼센트
○ 1: 50,000, 1: 10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1퍼센트
○ 1: 250,000, 1: 500,000, 1: 1,00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0퍼센트
○ 정밀도로지도 : km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0.01퍼센트

처리절차

신청서 제출	→	접수 및 검토	→	처리부 등재	→	심 사	→	기안 · 결재	측량성과심사 – 수탁기관장	→	통 보
신청인				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							

210㎜×297㎜(일반용지60g/㎡)